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교부 소관 중 ‘경제외교’ → ‘경제통상외교’ 로 개정>

■ 홍기원의원·김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7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지 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기원의원·김건의원 등 36인
2. 제안연월일 : 2026. 2. 9.
3. 회부연월일 : 2026.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의 관장 사무 중 ‘경제외교’를 ‘경제통상외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u>경제외교</u>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외교부) ① ----- -- <u>경제통상외교</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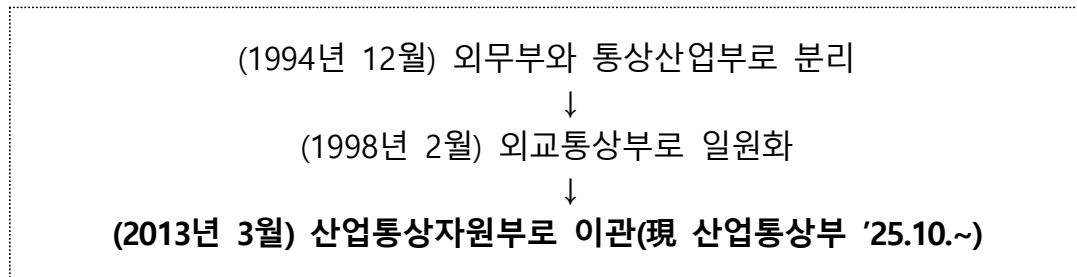
개정안은 외교부의 소관 사무 범위를 ‘경제외교’에서 ‘경제통상외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우리나라 통상 기능의 변천 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외무부와 통상산업부로 분리되었다가 1998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된 바 있음.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와 국내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시 산업통상자원부(現 산업통상부, '25.10.~)로 이관되었으며, 현재는 산업통상부¹⁾ 산하 통상교섭본부(차관급)

1) 「정부조직법」 제41조(산업통상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

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 중임.

< '통상' 기능 변천 연혁 >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가 경제와 외교·안보의 융합적 성격을 띠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와 해외에서 직접 통상외교를 수행하는 외교부(재외공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외교부에 통상외교 기능을 부여하면,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무외교와 경제통상외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가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다만, 현행 산업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교부에 통상외교 기능을 추가로 부여할 경우, '통상교섭'과 '통상외교'의 구분이 모호해져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역할 혼선이 초래될 수 있고, 외교부의 조직 특성상 정치·안보 등 정무 외교에 치중하느라 실물 경제 측면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됨.

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따라서 외교부 관장 사무 범위 개정(경제외교→경제통상외교)은 향후 국익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산업부처와 외교부처 수행 시 장단점 비교 】

구분	산업부처 주도형	외교부처 주도형
장점	▸ 일자리 창출, 국내기업 지원 등 경제·산업정책과 연계 가능 ▸ 통상현안의 전문화·기술화에 대해 효과적 대응가능	▸ 통상·외교 일원화로 일관성 있는 경제외교 추진 ▸ 외국 정부와 소통 및 재외공관 활용 용이
단점	▸ 경제·산업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통상이슈 대응에 한계 ▸ 대외 외교 보유 자원 활용에 한계	▸ 정치·안보 요소에 따라 통상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우려 ▸ 국내 산업, 무역정책 등 간 연계 미흡
해외사례	▸ 독일, 중국, 일본, 노르웨이 등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은 독립기관 형태의 USTR(무역대표부) 설치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현행 법적 근거에 따라 통상 업무 전반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 직무에 통상 기능을 추가할 경우, 부처 간 업무 영역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대외 협상 시 상대국의 소통 창구 인식에 혼선을 주고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임.²⁾

행정안전부 역시 부처 간 업무 중첩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재 외교

2) 산업통상부는 ‘통상’과 구분되는 ‘경제통상’ 개념의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부처 간의 협조와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조율할 사항이라고 설명함.

부가 경제 대외교섭 총괄 및 지역경제협력체 관련 외교정책 수립·조정 등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외교부는 경제외교와 통상 이슈가 불가분한 현 상황에서 ‘경제 통상외교’로의 개념 통합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APEC 등 주요 다자 회의에서 제기되는 통상 문제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

참고1

역대정부 통상기능 변동 연혁

제1.2공화국 (‘48.8 ~ ‘61.5)	외무부 (통상국) - 조약·협정	상공부 (상역국) - 무역에 관한 사무	기획처(‘48), 부흥부(‘55) - 경제계획의 관리조정
제3공화국 (‘62.12 ~ ‘73.12)	(통상국) - 통상·조약·국제협정	(상역국, 통상진흥국) - 무역에 관한 사무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 - 경제계획 종합조정,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
제4공화국 (‘73.12 ~ ‘80.10)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국) - 경제계획 종합조정,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
제5공화국 (‘80.10 ~ ‘88.2)		상공자원부 (상역국, 통상진흥국) - 무역에 관한 사무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 경제계획 조정
제6공화국 (‘88.3 ~ ‘93.2)	(통상국, 국제경제국) - 통상·조약·국제협정		재무부 (경제협력국) - 대외경제협력
문민정부 (‘93.3 ~ ‘98.2)	- 통상교섭·조약·국제협정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 통상에 관한 기능 * 통상협력 강화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 경제계획 조정, 대외경제 협력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98.3 ~ ‘08.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통상교섭·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 무역 및 무역진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 경제정책 조정, 경제협력
이명박 정부 (‘08.3 ~ ‘13.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통상교섭·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 무역에 관한 사무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 경제정책 조정, 경제협력 * FTA국내대책본부(‘08.3 ~ ‘13.2)
박근혜 정부 (‘13.3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 통상교섭·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 (‘17.5 ~)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 경제외교, 경제협력외교, 조약	(무역투자실) - 무역에 관한 사무	(대외경제국) - 경제정책 조정, 경제협력
윤석열 정부 (‘22.5 ~)		(통상교섭본부) - 통상교섭·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이재명 정부 (‘25.6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통상교섭·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 경제정책 조정, 경제협력

참고2

통상업무 수행체계

부 처	권한행사의 근거	주요 기능	산하단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대표)	○ 정부조직법 : <u>무역·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u>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통상대표 임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 통상교섭(수석대표) ○ 통상조약계획수립, 영향평가, 국회비준 ○ 국내보완대책 ○ 무역·통상진흥 및 산업기술 협력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통상교섭본부 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출보험공사 ○ 무역협회 ○ 산업연구원 (KIET)
외교부	○ 정부조직법 : <u>경제외교, 국제경제협력외교, 조약 기타 국제협정</u>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정부대표 임명)	○ 경제외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경제통상 지원 * 국제경제국 등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 재외공관
재정경제부	○ 정부조직법 : <u>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경제협력</u> ○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 경제정책, 대외경제 * 대외경제국 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수출입은행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12.1월 제정·시행)

-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산업부 장관), 국회 보고 및 비준동의 의무화
- 국내 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국민 의견수렴, 국회 등 통상협상에 관한 절차 사항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설치(산업부 소속, 민간위원 30명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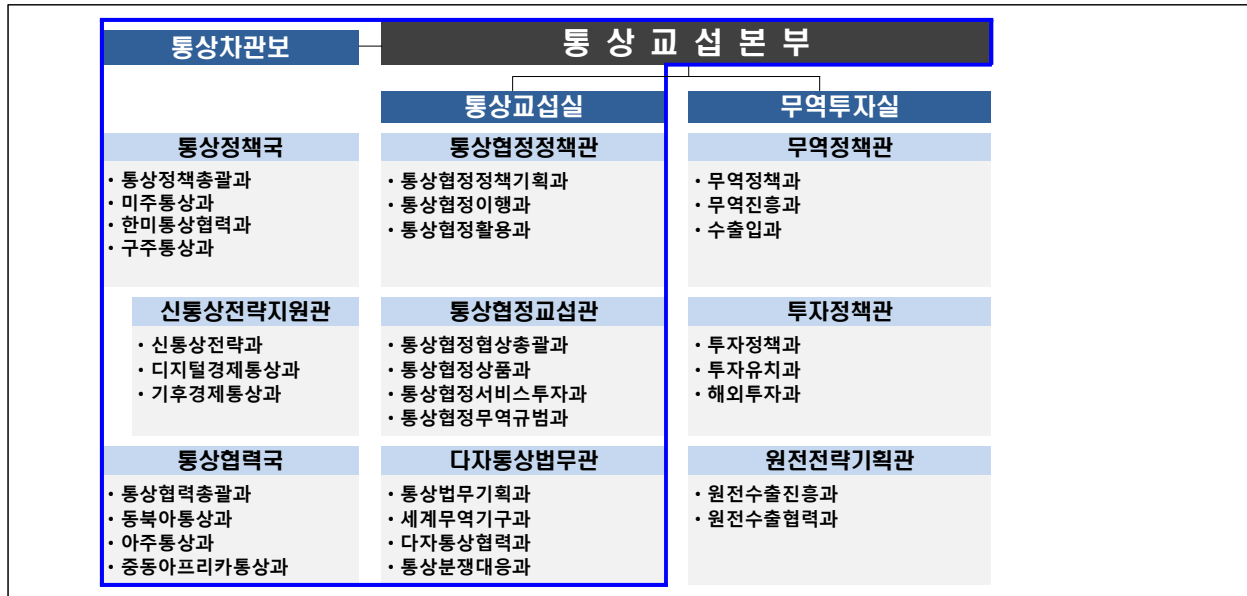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62.5월 제정·시행)

- 통상교섭대표 임명절차
 - 교섭에 관한 중요사항 : 산업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임명
 - 단순 통상 협의사항 : 산업부장관 요청 → 외교부장관 임명
- 통상교섭에 관한 지휘·감독권 : 산업부장관 * 일반 외교지휘감독권(외교부장관)

참고3

산업통상부 내 통상 관련 기구 · 인력 현황

□ 관련 기구



□ 관련 정원

기구		정원	기능
1본부, 1차관보·1실, 2국·4관		224	
통 상 차 관 보	통상정책국 - 통상정책총괄과 · 미주통상과 - 한미통상협력과 · 구주통상과	70	- 통상정책 수립 · 총괄 및 평가, 통상교섭 총괄 · 조정 - 미합중국·캐나다·중남미·유럽 등 통상 정책 및 협상 총괄 - 각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 운영 등
	신통상전략지원관 - 신통상전략과 · 디지털경제통상과 - 기후에너지통상과		
	통상협력국 - 통상협력총괄과 · 동북아통상과 - 아주통상과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39	- FTA 제외 양자간 무역 조약 또는 협정 - WTO, OECD 등 국제기구 등 다자간 산업 · 자원 협력 -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 통상 정책 및 양자 통상교섭 등
통 상 교 섭 실	통상협정정책관 - 통상협정정책기획과 - 통상협정이행과 - 통상협정활용과	44	- FTA 체결 관련 정책 수립 · 총괄 · 조정, 타당성 분석 - FTA 협상의 총괄 · 조정, FTA 이행 및 개선 협상
	통상협정교섭관 - 통상협정협상총괄과 - 통상협정상품과 -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 통상협정무역규범과	38	- FTA의 상품양허 · 원산지 · 무역구제 · 위생 ·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 - FTA의 정부조달 · 지식재산권 · 경쟁정책 · 환경 · 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 등
	다자통상법무관 - 통상법무기획과 · 세계무역기구과 - 다자통상협력과 · 통상분쟁대응과	33	- 국내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종합대응전략 수립 · 이행 - 통상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등

참고4

주요국 통상기능 수행 사례

○ 산업부처 주도형

국가명	부처명	주요기능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 통상협정·약정, 통상조사·통계, 국제협력
노르웨이	통상산업부	국제시장 기업지원,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지역협력
멕시코	경제부	국제통상 협상, 수출 및 투자업무, 불공정 무역 및 보호조사
터키	경제부	자유무역협정, 수출 진흥, 투자유치, 수입조사 보호업무
이스라엘	통산산업노동부	대외무역, FTA, 투자유치, 산업협력, 수출 및 자금지원

○ 외교부처 주도형

국가명	부처명	주요기능
캐나다	외교통상부	국제통상 및 투자 관련협상(FTA, MOU 등), 수출입 관련허가, 해외시장 정보제공, 해외 네트워크 구축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정책 개발·수행·조언, 국제 협정 협상, 해외 네트워크 구축(ICT 플랫폼 등), 개발도상국 통상관련 개발 원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국제통상 관련 협상, 수출입 관련 허가, 통상정책 이슈에 관한 정보 및 법률 조언 제공
칠레	외교부	수출 및 투자 진흥·보호, 경제협정 협상 및 체결, 불공정 경쟁감독 등을 경쟁·기술 발전 지원
아이슬란드	외교부	수출 규제·관리, 국제통상 협상, 통상 및 투자 진흥
스위스	외교부	수출 진흥(주요국가에 사무소 설치운영), 투자보호

○ 독립기관형

• 미국 무역대표부(대통령 직속, 장관급, '63년 설치)

- (수행체계) USTR은 전반적인 무역정책 총괄 수립·집행, 대외 창구역할
USTR 외에도 상무부, 국무부 등에서 국제통상 지원정책 등 담당
- (주요기능) 종합무역법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관한 조사 관련 상대국과 협상, 보복조치를 집행, 매년 미국의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실질적 장벽이 되는 교역 상대국의 법·정책·관행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자료: 행정안전부